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3월 15일

내부회계관리자 : 강성두
(전 화) 02-519-3638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 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 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회계처리규정' 이라 함은 세부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경리부서에서 제정한 사내 회계처리 지침을 말한다.
5. '조직규정', '인사노무관리규정', '회계관리규정', '전산운영관리규정' 등은 각각 담당부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 사내의 규정을 말한다.
"
6. '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회계적 사실의 인식· 기록 및 보관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일련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을 말한다.
"
7. '감사인'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

차를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장의 경리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서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영처리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제정 책임자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3월에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회계전표,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 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 ① 회계전표,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처리는 가급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장부에 기록된 회계기록은 별도로 정한 보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계전표의 담당자는 회계전표를 입력할 때 자기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담당자가 회계기록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고하거나, 기록을 복사해 전송 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직

제7조의2(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 ② 대표이사는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③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9조의 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① 회계업무관련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관련조직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회계단위 별로 관리·운

영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취급자를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등을 요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4장 설계 / 운영 / 평가 / 보고

제1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용한다.

제15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6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

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7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시)

-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5장 규정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19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0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

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1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내부신고하거나 별도의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2조 (규정의 제· 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 각조에 근거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 시행 전 회사사규·규정 및 지침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외감법의 시행일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중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등 법령에 의하여 단계별로 적용시기를 정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에 대한 적용일 이후부터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이사회1)	이강인	대표이사	-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	최문선	감사위원회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	강성두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와 운영		
전산운영부서	김정원	전무	-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보안관리		
감사부서	이호중	상무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검토		
공시관련부서	전호철	상무	- 기업내용 공시에 관한 사항 관리		
회계처리부서	조명호	이사	- 회계정보의 기록, 유지 관리 및 결산 기준 설정		

1) 감사위원회 포함하여 기재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 100)	
01사회1)	5	5	1	20%	49
감사위원회	3	3	1	33%	36
경영관리실	9	5	-	-	113
전산팀	8	8	-	-	67
재경팀	9	9	-	-	160
총무팀	11	4	-	-	120

1) 감사위원회 포함하여 기재함.

$$* \text{ 내부회계담당인력의 } = \frac{\text{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text{평균경력월수}} \text{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재경담당(임원)	조명호	519-3335	O	45	45	24시간	48시간
재경담당직원(팀장)	이한진	519-3333	O	16	11	24시간	48시간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2.02.22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I. 보고 배경 외감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I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2.03.23	대표이사	<p>2021.01.01~2021.12.3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p> <p>III. 종합 의견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의한 미비점은 없었음.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p>	주주총회 (예정)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주식회사 영풍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
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
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
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
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
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
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
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
을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2 월 22 일

주식회사 영 풍

대 표 이 사 이 강 인

내부회계관리자 강 성 등 (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2.02.22	감사위원회 위원장	<p>I 평가방법</p> <p>-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등의 방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p> <p>II 평가결과</p> <p>가.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조직의 적정성 : 외부감사법령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나. 자체 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유의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음.</p> <p>III 종합의견</p> <p>○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주식회사 영풍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 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2 월 22일

주식회사 영 풍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 문 선 (인) 

위 원 박 병 육 (인) 

위 원 심 일 선 (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1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이촌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p>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주식회사 영풍(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p> <p>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p> <p>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 견을 표명하였습니다.</p>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	-	-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영풍

주주 및 이사회 규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주식회사 영풍(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차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 특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화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
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김명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이촌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명진



2022년 3월 1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
다.

- 101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3

- 19 -

